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1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5일

나. 제 출 자 : 이재형 의원외 5인

다. 회부일자 : 2012년 11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2012. 12. 1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재형 의원)

가. 제안이유

-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향토문화재 발굴·보존·관리를 위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 향토문화재 보존 관리(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기 영)

- 이 조례안은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우리구 소재 향토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하고 활용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향상과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 안 제2조에 향토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향토문화재 발굴·보존관리를 위해 구의원 1명을 포함하여 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향토문화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에 향토문화재 발굴·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 및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소재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형·무형의 향토자료나 유적 등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향토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이재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
----------	-----

발의년월일 : 2012년 11월 15 일

발 의 자 : 이재형의원 외 5 명

1. 제안이유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향토문화재 발굴·보존·관리를 위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나.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향토문화재 보존 관리(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 다. 합 의 : 홍보관광과 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우리구 소재 향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발굴·보존·관리 및 활용하여 구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이하 "향토문화재"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향토문화재 발굴·보존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시 향토문화재 발굴·보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재의 발굴·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조사
2.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재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재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재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재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

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

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지정·해제의 고시 및 통지)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재는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4조(보존관리)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재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재와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를 연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발굴,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향토문화재 등의 관리·보호·수리·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한다.

제18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향토문화재의 멸실, 유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향토문화재를 관리, 보호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에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3. 향토문화재 발굴·보존·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향토문화재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지정서

- 명 칭 :
- 소 재 지 :
- 수 량 :

위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지정서 발급대장

[illegible]

(별 지 제3호서식)

○ 간판규격은 문화재 간판 C형으로 한다.

○ 내 용

